

「사후관리이행보증 업무 절차」 주요내용

I 사전 적립 기간

업무 내용	업무 절차
1. 납부예정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적립 일정 및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허가기관에 '16.4.30일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'16.7.31까지 납부예정인 사후관리이행보증금(사후관리비용+ 사용종료비용)을 현금, 보험증서, 담보물 중에서 선택하여 적립하면 됨
2. 사후관리이행보증 사전적립금으로 적립한 현금은 매립시설 사용 중 교체 불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사전적립한 현금은 사업(매립)기간 중도에 보험증서 또는 담보물로 교체 할 수 없음 ※ 적립된 현금은 매립시설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로 전환될 경우와 사후관리(30년) 중 당해 연도 사후관리를 이행한 경우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됨
3. 사후관리이행보증 사전적립금을 현금으로 적립한 경우 반환신청은 매립시설 사용종료 1년 전에 신청해야 반환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적립금을 현금으로 적립한 경우 ① 사용종료비용은 매립시설 사용 종료일 1년 전에, ② 당해 연도 사후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다음 연도에 지자체 (환경청)에 반환 신청을 하여야 적정기간 내 환급 받을 수 있음 ※ 반환절차 : 환경부, <u>다음 연도 예산 수요조사(2~3월)</u>, 예산안 편성(3월), <u>예산 요구(5월)</u>, 예산 국회확정(12월) → 환경부 집행예산 허가기관 배정(<u>다음 연도 2~3월</u>), 사업자 <u>반환(다음 연도 3~11월)</u>
4. 사후관리이행보증 사전적립금은 현금과 보증보험, 담보물로 적립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사전적립금을 현금으로 적립한 경우 적립된 현금의 반환은 불가능 하나, 추가 적립예정인 사전적립금은 보증보험, 담보물로 적립 가능함

업무내용	업무절차
5. 매립시설 사용종료 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적립방법 변경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립시설 사용종료 시, <u>기 적립한 현금은 반환받고,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산정</u>하여 보험증서, 담보물 중 선택하여 다시 제출 할 수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국가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적립된 현금의 전액 <u>일괄 반환은 어려운 경우가</u> 있을 수 있으므로 <u>현금을 적립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</u> ※ <u>사전적립금 일괄 반환은 환경부 예산편성 및 심의(기획재정부, 국회)과정에서 환경부 요구 금액이 전액 반영 되지 않을 수 있음</u> ※ 다만, <u>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</u> 당해 연도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연도에 반환하며, <u>대부분 전액 반환함(소액)</u>
6. 최종복토비용 산출 시 실제 최종복토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 중 최종복토면적은 매립시설 최상부의 실제 최종복토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임. 단, 변경허가 등을 통해 최종복토 면적 예측이 어려운 경우 사용개시 면적으로 산출함
7. 사전적립 시 보험증서 분리 제출 불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적립(사용종료비용+사후관리비용)은 보험증서 1장으로만 제출 가능함
8. 최종복토비용 현금, 보험증서, 담보물 중 선택 납부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후관리이행보증 사전적립금은 매립시설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(복토비용+최종검사비용)과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(침출수처리비용+제방유지·관리비용+정기검사비용)을 합산하여 적립하며, 현금, 보험증서, 담보물 중 선택하여 납부 가능함 ※ <u>보험증서는 현장 확인 후 보증금을 선지급(30일 이내)함에 따라 현금과 동일하게 바로 사용 가능</u>
9.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조기 납부 요청 불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전적립계획서만 '16.4.30까지 제출하고, 사전적립은 '16.7.31까지 완납하면 됨

II 사후관리기간

업무내용	업무절차									
<p>1. 동일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매립장이 연접되어 사용개시 신고일이 다르더라도 사용종료 일이 같은 경우 하나의 매립시설로 적용 가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 취지(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보증)을 감안 할 때, 동일한 사업장내 하나의 매립시설을 여러 공구로 나누어 가동개시(연접지역에 한함)한 후 최종복토 및 사후관리를 하나의 매립 시설로 할 경우 하나의 매립시설로 적용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이 가능함 									
<p>2.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험증서 환급형(1장), 소멸형(30장) 선택 가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후관리이행보증금(사후관리비용)을 보험증서로 제출 시 환급형(1장) 또는 소멸형(30장) 중 선택 제출 가능함 <p>※ 보험증서 환급형, 소멸형 장단점 비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구 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장 점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단 점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10px;">가.환급형(1장)</td><td style="padding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후관리 이행율에 따른 보험 증서 갱신 가능(피보험자 확인 후 보증금액 차등 감액 가능) 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초기 보험료 높음 · 매년 보험증서 갱신 필요(교체 / 보험료 환급) 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10px;">나.소멸형(30장)</td><td style="padding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도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초기 보험료 낮음 · 매년 보험증서 갱신 불필요 (1장씩 소멸, 보험료 환급 없음) 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후관리 이행율에 따른 보험 증서 갱신 불가능(연차별 보증 금액 고정)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장 점	단 점	가.환급형(1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후관리 이행율에 따른 보험 증서 갱신 가능(피보험자 확인 후 보증금액 차등 감액 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초기 보험료 높음 · 매년 보험증서 갱신 필요(교체 / 보험료 환급) 	나.소멸형(30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도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초기 보험료 낮음 · 매년 보험증서 갱신 불필요 (1장씩 소멸, 보험료 환급 없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후관리 이행율에 따른 보험 증서 갱신 불가능(연차별 보증 금액 고정)
구 분	장 점	단 점								
가.환급형(1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후관리 이행율에 따른 보험 증서 갱신 가능(피보험자 확인 후 보증금액 차등 감액 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초기 보험료 높음 · 매년 보험증서 갱신 필요(교체 / 보험료 환급) 								
나.소멸형(30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도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초기 보험료 낮음 · 매년 보험증서 갱신 불필요 (1장씩 소멸, 보험료 환급 없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후관리 이행율에 따른 보험 증서 갱신 불가능(연차별 보증 금액 고정) 								
<p>3. 사후관리이행에 따라 보험증서 갱신 가능(다만, 사전적립금은 반환 대상이 아님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·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한 경우 그 사후관리 이행정도와 잔여 사후관리기간 등을 검토하여 보증보험증서의 갱신을 승인할 수 있음 <p>※ 「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」에 '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갱신 조항 신설'</p>									